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기자회견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시: 7월 16일 (금) 오전 11시

장소: 안국동 느티나무

순서:

-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연대회의 성명 발표

호림 스님 (연대회의 공동대표)

-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각계 의견

박경석 (장애인이동권연대)

홍근수 (목사)

권오강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이주영 (인권운동사랑방)

조순덕 (민가협)

이재승(국민대)

- 병역거부자들의 편지 낭독

나동혁(병역거부자)

- 이제 현재와 입법부가 나서라

한홍구 교수(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사회: 최정민(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즉각 대체복무제도 개선에 나서라!

2004년 7월 15일 오후 2시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최명진 씨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라며 “양심 실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밝혔다. 또 헌법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규정을 인용하며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자유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대회의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뜻을 표한다. 물론 국가공동체에 살고 있는 개인들에게 무한의 자유가 보장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그 실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양심의 자유는 과연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 자유를 제한했던 방법과 정도가 타당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아무리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미 15만에 달하는 대체복무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에서 마치 병역거부자들의 양심 실현의 자유를 보장하면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재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상황 하에서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소수자들의 양심 실현의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진정한 핵심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1명이지만 “국가형벌권이 한 발 양보함으로써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보다 더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이

제기되고 또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하여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보충의견에서도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 사법적인 최종판결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현행 병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헌법재판소가 아직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연대회의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하고도 전향적인 판결을 요청한다. 또한 사법부의 이러한 판결과는 별개로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정부와 입법부와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대체복무제도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정부와 17대 국회는 즉각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을 통해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4. 7. 15.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국제민주연대/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기독교사회시민연대/ 녹색연합/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회당/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지지모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호근 지지모임 평화사랑/ 여성해방연대/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 인권운동을 위한 열린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불교운동연합/ 전쟁없는세상/ 좋은벗들/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함께가는사람들/ 환경운동연합

병역거부자들의 편지

대법원 판결에 즈음하여 - 다시 감옥을 앞두고

제가 입영을 거부하고 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이 2002년 9월이었으니 어느덧 입영을 거부한 지도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때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는 ‘이제 감옥에 갈 시간이 됐구나.’ 생각했습니다. 감옥에서 보낼 시간들을 준비하며 이런 저런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저는 여전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동안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반대하고 있다지만 최근 몇 년 간 일어난 변화는 대단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기가 1년 6개월로 줄어들었고, 교도소 안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종교적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의식있는 판사님의 노력으로 위헌법률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지는가 하면, 병역거부자가 최초 무죄 판결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더디기는 하지만 50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은 듯, 양심의 자유를 이해하려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되었고 전쟁과 평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잇따랐습니다. 분명 가까운 미래에 병역거부자들의 진심을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7월 15일, 대법원 판결에서 병역거부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그 동안 중단되었던 저를 비롯한 여러 병역거부자들 재판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재판 결과에 따라 2년간 유예되었던 감옥살이가 시작될 것입니다.

감옥을 앞두고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비롯해 가족에 대한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저와 관계를 맺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작년 11월 현역군인으로서 처음으로 파병반대 병역거부 농성을 했던 강철민 씨입니다. 그의 선한 눈빛이 아직도 분명히 기억납니다. 그는 지금 마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김선일씨 죽음에 항의하는 뜻으로 교도소에서 10일 넘는 단식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는 분들께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력으로 무엇을 얻으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파병은 물론 힘으로 국익을 추구하려는 모든 정책과 정부시책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수많은 전쟁으로 얼룩졌던 살육의 시대는 20세기로 끝내야 합니다. 인간이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공존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믿음만 있다면 전쟁없는세상은 가능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희망을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 사람이 무고하게 죽었습니다. 높이신 분들이 매일 같이 말하는 국익의 실체입니다. 그들에게 한미동맹은 종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힘의 동맹으로 국익을 추구하고, 남의 나라 국민은 물론 내 나라 국민까지 해치는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할 것이 국익이란 말입니까? 전쟁은 또 다시 테러를 낳고 테러는 또 다시 더 큰 전쟁을 부를 것입니다. 우리는 그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희생되어 간 죄없는 목숨들의 아픔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모든 것을 던져가며 추구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평화주의'는 단지 평화애호도 아니고 이기심이나 방관이나 무기력도 아닙니다. 전쟁에 정의는 없습니다. 전쟁의 바탕이 되는 모든 유무형의 폭력에 '비폭력'으로 일관되게 맞서 싸우는 신념이 '평화주의'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상과 꿈을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의 사태에 입각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쟁지역 난민구제, 평화재건, 국가간 빈부격차를 비롯한 불평등 해소, 평화교섭의 중재와 실현, 양심의 자유 인정, 평화교육 확산 등 평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태산입니다. 그 모든 노력을 멀리하고 하필 우리는 파병을 선택했습니다. 군사력 행사는 가장 최악의 선택입니다.

저는 완전무결한 인간이 아닙니다. 감옥을 앞두고 어떤 두려움도 없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감옥을 가야만 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용기가 있습니다. 또 감옥 안에서, 그리고 형기를 마친 이후에도 제 신념에 따라 평화를 일구는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치않을 신념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인권과 평화를 향한 여러 사람들의 노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을 위한 노력은 결코 꺾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드립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촉구하는

종교계 성명

지난 15일 대법원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2인에 대하여 상고심 기각 결정을 내려 사실상의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우리 종교인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헌법에 명시된 [종교 및 사상의 자유]에 관한 국민기본권을 훼손하고,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300여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재판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001년 초, 우리 사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1만여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징총 및 군사훈련을 거부하여 전과자가 되었는바, 이들은 자신이 생명처럼 믿고 따르는 신앙을 지키고, 교리적 가르침에 충실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인권유린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매년 6-700여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으로 향하고 있으며, 현재 500여명의 젊은이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지만, 이들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구제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최근에는 특정 종교인을 넘어 불교,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여 징총 및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이 등장하고, 더 나아가 반전평화, 생태주의 사상에 입각한 일반인들의 병역거부도 확산되면서 이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특정 종교인들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양심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행위임이 증명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유엔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규약에 기초하여 유엔회원국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장을 이행할 것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한국정부도 수년간 찬성 의사를 밝혀왔다. 또한 사법계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법정최고형인 3년을 선고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1년 6개월의 맞춤형 선고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60여년간의 획일적인 유죄 판결의 관행을 깨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3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변화하는 국민과 사회여론을 반영하듯 시민사회와 국회 일각에서 ‘대체복무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유죄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21세기를 새롭게 평화의 세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새천년 벽두에 선언한 종교인들로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기하고 있는 국민기본권으로서 ‘종교 및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재 계류 중인 위헌법률제청신청에 대하여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2. 국회는 병역이행자는 물론이거니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합리적 대안으로서 ‘민간대체복무’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3. 우리 종교인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종교의 평화적 전통에 근거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병역거부자가 종교인으로서 고통받고 있음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7월 16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촉구하는
종교계 단체·성직자 일동

단체

기독교여민회 / 기장생명선교연대 / 반전평화기독교연대 / 예정일하는예수회 / 전국목회자정의 평화실천협의회 /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 원불교인권위원회 /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 도서출판공동선 /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 우리신학연구소 인천가톨릭청년연대 / 전국가톨릭대학생대표자협의회 / 전국가톨릭청년단체협의회 / 천주교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 천주교서울대교구대학생연합회 /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천주교청년공동체 / 천주교도시빈민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 한국가톨릭농민회 / 한국기독교청년학생연합회 /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 대한불교청년회 / 불교인권위원회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인드라마생명공동체 / (사)좋은벗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성직자

기독교(목사 20명)

성해용 정진우 김성복 진광수 김성윤 최재봉 장창원 이인철 임광빈 정석태
김태현 조정현 김오성 박후임 정중훈 박후임 안하원 정태효 김홍식 황필규

불교 (스님 19명)

효 립 수 경 진 관 재 원 철 응 영 담 종 광 지 원 혜 총 유 수
장 적 일 문 혜 조 법 상 종 호 부 경 금 강 정 휴 효 진 법 천

원불교 (교무 33명)

강해윤 강형신 김경일 김대선 김도우 남성균 서영수 서현조 손현오 송용원
신명국 양영인 오광선 오정행 우세관 유성신 이덕도 이선조 이윤덕 이현무
전세중 정상덕 조성천 최남호 최정풍 최진선 하상덕 한경천 한수덕 한은경
한청복 홍현두 황화경 .

천주교 (신부 40명)

고원일 고정배 곽동철 권순호 권오준 김병상 김봉술 김영식 김일희 김진룡
김진화 김택암 나승구 남국현 맹제영 문규현 문정현 박요환 백남해 손태성
신성국 심용섭 안승길 안충석 유영일 유이규 이상돈 이상원 전중훈 정도영
정석현 정원일 정진호 조명연 조성제 조성학 조영만 함세웅 허윤진 황상근



문서번호 : 04-07-사무05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논평]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개탄한다

전송일자 : 2004년 7월 15일(목)

전송매수 : 표지포함 총2매

[논평]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개탄한다

대법원이 오늘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의 병역거부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고, 광범한 입법재량을 부여받은 입법자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유죄를 선고하였다.

우리는 지난 2001년 여호와의 증인들의 병역거부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이후, 여호와의 증인들을 비롯한 종교적 양심과 평화주의에 기초한 병역거부자들의 문제가 인간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관련된 문제로서, 그들의 양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 사태가 계속되도록 한 데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얼마나 더 많은 젊은이들이 단지 총을 들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서로 충돌하는 헌법적 법익들이 모두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하며, 이 사건 피고인이 집총병역의 형식과 내용이 아니라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가지고 자신의 양심상 결정에 반하는 집총병역의무의 이행을 소극적으로 거부하고 있을 뿐이므로 국가공동체의 다른 사람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병역법의 입법목적에 결정적으로 훼손한다고도 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에 주목한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해석상 매우 중요한 문제인 이 사안에 대하여, 기본권 존중의 헌법정신과 헌법상 법익들의 조화로운 실현이라는 관점에 따라 전향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수 년 전부터 줄곧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국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형사처벌하지 말고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라는 유엔 인권위 결의에 찬동하면서도, 정작 국내에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소수자에 대한 포용이야말로 민주주의 발전의 징표이다. 유럽은 물론, 우리와 같은 분단 상태에 있는 대만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수준을 높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6명의 대법관이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시한 이상, 정부와 입법자인 국회가 더 이상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미루어서는 아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라.

2004. 7.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 석 태